##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9

발의연월일: 2020. 6. 22.

발 의 자:정청래·오영환·이원욱

남인순 · 한정애 · 김경만

김영주 • 우원식 • 주철현

이낙연 · 이장섭 · 양이원영

김주영 · 이규민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회계처리를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 예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수신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수신료와 다른 재원을 통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음.

따라서 수신료의 집행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수신료 운용·관리의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결산 시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해 국회의 승인 이후 14일 이내에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이사·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해 국민이 납부한 수신료 운용·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5조제2항·제3항. 제55

조의2 신설 등).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사는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징수된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이사·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1. 이사 · 임원의 보수 및 각종 수당 내역
- 2. 이사 · 임원의 업무추진비 내역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9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이를"을 "국회의 승인 이후 14일 이내에 결산서등을"로 한다.

2.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징수된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및 그 부속서류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신료의 회계분리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3항 및 제59
조제2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55條(會計處理) ①・② (생	제55조(회계처리) ①・② (현행과
략)	같음)
<u>&lt;신 설&gt;</u>	③ 공사는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징수된 수신료를 다른 재
	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u>한다.</u>
<u> &lt;신 설&gt;</u>	제55조의2(이사·임원의 보수 등
	의 공개) 이사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
	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
	<u>다.</u>
	1. 이사・임원의 보수 및 각종
	<u>수당 내역</u>
	2. 이사·임원의 업무추진비 내
	<u>역</u>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u>는 사항</u>
第59條(決算書의 제출) ① (생	第59條(決算書의 제출)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第1項의 決算書에는 다음	2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	
다.	

- 1. (생 략) <u><신 설></u>
- 2. (생략)
- ③ ~ ⑤ (생 략)
- ⑥ 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고, 공사의 사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1. (현행과 같음)
- 2.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징수된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및그 부속서류
- <u>3.</u> (현행 제2호와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
- (6) -----
- \_\_\_\_\_
- ---<u>국회의 승인 이후 14일 이내</u> <u>에</u> 결산서등을-----

--.